의안번호	제 79	98 호	
의 결	2018년	월	일
연 월 일	(제	회)	

충청북도 저소득 법무보호복지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

발 의 자	박봉순 의원 등 6인
발의연월일	2018년 3월 14일

# 충청북도 저소득 법무보호복지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

(박봉순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

798

발의연월일 : 2018년 3월 14일

발 의 자: 박봉순, 최광옥, 연철흠,

박한범, 이언구, 임병운

#### 1. 제정이유

○ 저소득 법무보호복지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함으로 서 출소자들의 재범죄를 예방하여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도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함.

#### 2. 주요내용

- O 저소득 법무보호복지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개발·보급하여야 하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(안제3조).
- O 저소득 법무보호복지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5조).
- 저소득 법무보호복지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한 사업을 추진 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(안 제5조).
- O 저소득 법무보호복지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

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,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, 정신보건시설,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·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함 (안 제7조).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」

나. 관련부서 협의 : 행정국 자치행정과 협의함

나. 예산조치 : 관계없음.

라. 입법예고 : 2018. 3. 2 ~ 3. 12(10일간)

# 충청북도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의 시회정착 지원 조례(안)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저소득 법 무보호복지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 죄예방과 충북도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적용범위) "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"(이하 "대상자 등 "이라 한다)이란 「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」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대상자 중 충청북도에 주소를 둔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상의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를 말한다.
- 제3조(도지사의 책무) 충청북도지사(이하 "도지사"라고 한다)는 대상 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개발·보급하여야 한다.
- 제4조(도민의 의무) 충청북도민(이하 "도민"이라 한다)은 대상자 등이 가정 및 사회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수용 및 화해분위기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5조(사업) 도지사는 대상자 등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.
  - 1. 상담 및 심리치료 사업
  - 2. 직업교육 사업

- 3. 그 밖에 대상자 등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
- 제6조(보조) 도지사는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.
- 제7조(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) 도지사는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 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및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, 정신보건시설,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·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한다.

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관련법령 발췌

- □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(약칭: 보호관찰법)
-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 - 13. "공공시설"이란 도로·공원·철도·수도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.
- 제2조(국민의 협력 등) ① 모든 국민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지위와 능력에 따라 협력하여야 한다.
  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죄를 지은 사람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하여 보호선도 사업을 육성할 책임을 진다.
- 제3조(대상자) ① 보호관찰을 받을 사람(이하 "보호관찰 대상자"라 한다) 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 - 1. 「형법」제59조의2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
  - 2. 「형법」제62조의2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 고받은 사람
  - 3. 「형법」제73조의2 또는 이 법 제25조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가석방되거나 임시퇴원된 사람
  - 4. 「소년법」제3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
  - 5.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
- ②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하여야 할 사람(이하 "사회봉사·수강명령 대상자 "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 - 1. ~ 3. (생략)

- ③ 갱생보호를 받을 사람(이하 "갱생보호 대상자"라 한다)은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 제공, 주거 지원, 창업 지원,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.
- 제14조(보호관찰소의 설치) ① 보호관찰, 사회봉사, 수강 및 갱생보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보호관찰소를 둔다.
- ② 보호관찰소의 사무 일부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그 관할 구역에 보호 관찰지소를 둘 수 있다.
- 제71조(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설립) 갱생보호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(이하 "공단"이라 한다)을 설립한다.

##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

#### ○ 첨부제외 관련규정

-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(비용추계서 작성대상)제4항 1호

# ○ 사 유

의안의 내용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.

#### ○ 작성자

- 행정국 자치행정과장 고 행 준